



수 원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23누11197 취득세,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
원고, 항소인 A조합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○○
피고, 피항소인 ○○시장
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. 2. 9. 선고 2022구합67525 판결
변 론 종 결 2023. 12. 15.
판 결 선 고 2024. 1. 19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20. 11. 23. 원고에게 한 취득세 596,616,590원, 지방교육세 59,661,66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취득세 212,091,950원, 지방교육세 21,209,19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.

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.

원고는 이 법원에서도,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토지를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주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고시에 따른 건축한계선의 변경 등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원고의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.

그러나 이 사건 변경결정이 원고의 건축에 어떠한 제한을 야기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,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일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존재하는 사유를 넘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사정임을 뒷받침할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사실관계 및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,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.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2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노○○

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4-06-14

판사 박○○

판사 정○○